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4. 2. 한선미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24. 4. 3.

다. 상정일자 : 제26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4.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오옥자 의원

가.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경력보유여성 및 돌봄 노동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용어의 정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안 제4조)

○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 및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마포구민의 참여(안 제5조)

○ 경력보유여성의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는 경력보유여성 및 돌봄 노동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책무 및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를
- 안 제9조에서는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업무의 위탁과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서울시 통계(2021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에 따르면 2020년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로 남성의 67.3%에 비해 적고, 여성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31만원으로 남성 353만원의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혼인·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우리구도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기업의 여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경력보유여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화확산 등 각종 시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력 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이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약칭: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임. 이에 우리 구 역시 선도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보유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돌봄경력 인정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여성경제활동법이 개정된 이후에 돌봄경력 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것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